

# 情報公開制度와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

1992. 4

연구자 : 박영도(책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 目 次

I. 序 説 -----	1
1. 情報公開制度의 意義와 必要性 -----	1
2. 情報公開의 理念 -----	2
II. 各國의 情報公開法制와 運用實態 -----	3
1. 스웨덴 -----	4
2. 덴마크 -----	5
3. 노르웨이 -----	6
4. 네덜란드 -----	6
5. 프랑스 -----	7
6. 미 국 -----	8
7. 카나다 -----	9
8. 핀란드 -----	10
9. 호 주 -----	11
10. 뉴질랜드 -----	12
11. 오스트리아 -----	13
12. 독 일 -----	13
13. 영 국 -----	14
14. 일 본 -----	14
III.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의 現況과 立法課題 -----	15
1.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論議 -----	15

2. 情報公開에 관한 現行制度概觀 -----	17
3.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 -----	18
(1) 對象情報 -----	18
(2) 情報開示請求權者 -----	18
(3) 適用除外事項 -----	18
(4) 第3者情報의 取扱 -----	19
(5) 個人情報의 保護 -----	20
(6) 救濟制度 -----	21
(7) 既存의 情報公開制度와의 關係 -----	21
 IV. 結 語 -----	22

<附 錄>

* 情報公開와 관련된 現行法制의 概要 -----	24
* 主要國家의 情報公開法의 現況 -----	25

# 情報公開制度와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

## I. 序 說

### 1. 情報公開制度의 意義와 必要性

최근 情報處理技術 및 通信技術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情報의 生산·유통·처리의 增大와 신속화, 다양화는 產業部門과 社會 및 家庭生活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存在樣式과 價值體系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化社會로의 전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대등 다양한 肯定的인 效果를 부여한 반면, 情報環境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새로운 負擔을 가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특히 情報化社會가 진전되면서 情報를 취급하는 媒體가 거대화함과 동시에 情報의 과점·독점현상이 발생하여 流通하는 情報가 편중되어 均衡을 상실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國民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情報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集中을 배제하여 국민에게 情報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의 實現을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情報公開制度라 할 수 있다.<sup>2)</sup>

1) 「情報化社會」에 관한 자세한 論議는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編), 「情報化社會 -挑戰과 對應-」, 서울大出版部 1986 ; 國會報(特輯), 「情報化社會와 그 對應方案」, 國會報 1991.1. ; 東京大學公開講座, 「情報化と社會」, 東京大學出版會 1991 ; A. Roßnagel(Hrsg.), 「Freiheit im Griff. Informationsgesellschaft und Grundgesetz」, Stuttgart 1989 등 參照.

政府의 情報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情報公開制度를 인정하여야하는 이유로서는<sup>3)</sup> ①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行政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國民은 參政權을 행사하여 政治過程에 직접 참가하고 또는 行政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를 위해서는 政府가 보유하고 있는 情報를 전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② 國民은 行政의 主體임과 동시에 客體이기도 하므로 거대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行政權에 대해 국민이 行政의 公平성과 합리성의 확보를 요구하려고 하므로 行行政의 情報를 알리는 것이 불가결하며 行行政의 意思決定過程이나 기초가 되는 情報를 알리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수호할 수 없다는 점, ③ 國民은 납세자이며 정부가 수집한 情報는 국민의 財產이므로 국민이 정부가 보유한 情報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등이다.<sup>4)</sup>

## 2. 情報公開의 理念

일반적으로 情報公開를 뒷받침하는 理念은 「알 権利」로 부터 파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우리 憲法에서는 이러한 알 権利를 명문으로 규정

- 
- 2) 卞在玉, 「現代社會에 있어서 情報公開와 人權保障」, 韓國法學院 法律學 심포지움자료, 1991.12.5., 8面 以下.
  - 3) 情報公開의 필요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姜京根,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研究」, 고려大 博士論文 1983, 4面 以下 參照.
  - 4) 浅野一郎 外, 「情報化社會と法」, 啓文社 1991, 31面.
  - 5) 「알 権利」의 자세한 내용은 安溶教, 「國民의 알 権利에 관한 研究」, 건국大 博士論文 1975 ; 石村善治・奥平康弘(編), 「知る権利 -マスコミと法-」, 有斐閣 1974 ; 阪本昌成, 「知る権利の意味とその實現」, ジュリスト 第384號, 1987.5., 207-218面.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表現의 自由(제21조1항), 國民主權의 原理(제1조2항),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제10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제34조1항)등 다양한 기본권으로 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일 權利는 단순히 타인에게 情報를 제공하는 自由가 아니라 자신이 情報를 수집할 수 있는 權利, 특히 政府의 情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國民主權의 原理上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情報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國民의 「民主的 意思形成의 基礎」<sup>7)</sup>라고 할 수 있는 일 權利는 오늘날 훨씬적으로 民主的 公開性의 요구에<sup>8)</sup> 까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 權利가 헌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憲法에 근거하여 직접 情報公開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情報公開制度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法律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 II. 各國의 情報公開法制와 運用實態<sup>9)</sup>

- 6)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2, 411-412面 ; 丘秉朔,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과 課題」, 公法研究 第17輯, 1989, 10面 以下.
- 7)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5 Aufl, Heidelberg 1984, S.161. [桂禧悅(譯), 西獨憲法原論, 三英社 1987, 239面].
- 8) 小林直樹, 「憲法政策論」, 日本評論社 1991, 83面.
- 9) 각국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丘秉朔, 「國民의 알 권리와 國政의 情報公開」, 現代公法의 理論(牧村 金道昶博士華甲紀念), 學研社 1982, 101-120面 ; 姜京根, 前揭論文, 36-121面 ; 韓國公法學會, 「情報化社會의 公法的 對應」, 國際學術大會論文集, 1986 ; 金哲洙, 「情報公開法과 私生活保護法序說」, 情報의 藏集·管理와 私生活保護(89電氣通信學

## 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行政機關이나 法院을 통제하였던 의회의 비밀주의가 문제로 되면서 憲法의 일부를 이루는 法律로서 1766년 12월 공문서는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公衆에게 公開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 原則은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特定 法律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出版의 自由에 관한 基本法(Freedom of the Press Act)』 제 2 장에서 16개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모든 市民 및 外國人에게 공문서를 閱覽하고,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여 複寫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制約할 수 있는 것은 그 制約을 상세히 규정한 특정의 制定法에 의하나, 出版의 自由에 관한 基本法에서 정한 ①王國의 안전 및 諸外國 또는 國際組織과의 관계 ②王國의 중앙재정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거래정책 ③犯罪의 방지 또는 소추를 위한 利益 ④官公署가 행하는 검사, 규제 기타 감독을 위한 活動 ⑤個人의 존엄 또는 개인의 經濟狀況의 보호 ⑥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경제적 이익 ⑦動植物의 種의 보호를 위한 이익 등 특정의 중대한 利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

---

術研究課題), 1989, 27面 以下 ; 石村善治(編), 「情報公開 -その原理と展望」, 法律文化社 1983 ; 清水英夫(編), 「情報公開と知る権利」, 三省堂 1986 ; 平松 賀, 「情報公開 -各國制度のしくみと理論」, 有斐閣 1983 ; 總務廳行政管理局, 「情報公開 -制度化への課題」, 第一法規 1991 ; Donald C. Rowat(edit.), 「Administrative Secrecy in Developed Countries」, Columbia Univ. Press 1979 [ D. C. ロウット 堤口康博(譯), 情報公開と行政秘密 -先進諸國の動向, 早稻田大學出版部 1982] 등 參照. 또한 本文 附錄의 도표 [主要國家의 情報公開法의 現況] 參照.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받아서『公務上의 秘密維持에 관한 法律(1937년 제정)』이 있으며, 그곳에 상세히 公開除外情報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情報公開가 거부된 경우의 救濟手段에 관해서는 出版의 自由에 관한 基本法 제15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일반시민으로 부터의直接請求는 그 사례가 적으며, 報道機關을 통한 이용이 많은 실정이다.<sup>10)</sup>

## 2. 덴마크

덴마크에서의 情報公開制度는 1866년부터 이해관계자에게만 文書開示請求權을 부여하는 법률제도가 있었으나, 일반적 公文書公開制度를 주장하였던野黨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1970년 6월『行政文書에 대한 接近에 관한 法律(The Danish Access to Public Administration Files Act)』을 제정하였다. 同法의 특징으로는 書類 또는 案件을 명확히하여 개시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각 大臣은 일정서류의 문서를 法律의 適用除外로 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는등 개시청구권이 한정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현재 덴마크에서의 이 制度의 이용상황은 매우 저조하며, 그 대부분이 個人的 事案으로

- 
- 10) 스웨덴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문헌으로는 Sigvard Holstad, 「Sweden」, in : Donald C. Rowat(edit), *ibid.* ; Stanley V. Anderson, 「Public Access to Government Files in Swede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21, 1973. ; Isabell Mahrer, 「Die Öffentlichkeit amtlicher Akten in Sweden」,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88, 1969. ; 潮見憲三良, 「スウェーデンの情報公開」, ジュリスト臨時増刊 第742號, 1981, 148面 以下 ; 平松 穀, 「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公文書公開の原則」,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77-84面 ; 同,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スウェーデン)」,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28-37面 參照.

되고 있다.<sup>11</sup>

### 3. 노르웨이

行政文書公開制度의 채용에 관하여 노르웨이는 연립정권하에서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報道機關의 제정요구 및 덴마크에서의 法律制定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1970년 6월 『行政에 있어서 公開性에 관한 法律(Law on Publicity in Administration)』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特色으로는 ①行政文書가 事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며 그 公開가 공익 또는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公開를 자연하거나 非公開로 할 수 있도록 한 점(동법 제6조), ②文書를 공개하는 방법에 관해 公務의 적정한 집행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을 정한 점(제8조), ③同法律은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며 기존의 文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제13조), ④일정종류의 文書에 관해서는 정부는 非公開가 원칙이며 公開를例外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제11조), ⑤政府는 일정종류의 事案, 文書 또는 일정 행정영역에 관해 公開를 자연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 것(제4조2항) 등이다. 여하튼 동 법률의 제정동기가 報道機關의 요구에 의한 결과, 一般國民의 관심은 저조하며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 4. 네덜란드

---

11) 자세한 내용은 平松 穀, 前掲書, 176-195面 參照. 또한 Niels Eilschou Holm, 「Denmark」, in : D. C. Rowat, ibid. P.82.

12) Arvid Frihagen, 「Norway」, in : D. C. Rowat, ibid. P.117.

네덜란드에 있어서 情報公開制度는 1968년의 行政情報委員會에 의한 行政情報에 접근하는 권리에 관한 권고후 동위원회의 議長職을 담당하였던 者(Biesheuvel)를 수반으로 하는 聯立內閣이 성립하면서 정부가 종래 실시하여 온 관청에 대한 情報照會制度에 덧붙여 보다 광범한 情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行政情報에 接近하는 權利에 관한 法律(Law of November 9th 1978 on the Access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을 마련하였다. 동법률은 情報의 公開를 「건전하고 民主的인 統治」를 촉진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며, 아울러 이 목적은 公開情報의 제한하는 역할을 거두도록 하고 있다. 非公開事項에 대해서는 法律 제4조에서 9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sup>13)</sup>

## 5. 프랑스

프랑스에 있어서 行政文書公開主義은 1971년도 부터 행정문서공개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행하였으나, 1977년 행정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行政文書에 대한 接近의 自由를 추가하는 발의를 하면서 議會의 수정을 거쳐 1978년 7월 『行政文書의 接近에 관한 法律(Law on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無記名行政文書에 대한 접근의 자유권은 모든 者에게 보장되며, 대상이 되는 文書의 형태는 書面, 錄音, 錄畫, 컴퓨터처리된 無記名情報를 포함한다. 그리고 적

13) 자세한 内容은 總務廳行政管理局 監修, 前揭書, 345-349面 ; 平松 穀, 前揭書, 238-251面 參照.

용제외사항에 관한 通則的 内容은 동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은 部令으로 문서의 성질 또는 그 대상상 일반국민에게 개시할 수 없는 行政文書의 目錄을 행정문서의 접근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 있어서 동법률의 運用狀況은 行政기관이 委員會에 조언을 구하는 回數의 증가, 行政기관이 委員會의 勸告에 따르는 사례의 증가등에 비추어 볼때 점차 그 이용추세가 진전되고 있으며 또한 開示請求를 받는 문서의 半數이상이 세금, 의료, 사회보장급부, 공무원의 직무등 개인적인 이해와 관계된 것이 많으며, 政府의 공공사업관계서류, 중요한 정부정책결정기초자료등 一般公衆의 利益에 관한 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行政側을 상대방으로 하는 法的爭訟準備 또는 訴訟에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아지고 있으며, 委員會에서는 행정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利用이나 흥미본위의 利用등은 權利의 濫用이라고 하고 있다.<sup>10</sup>

## 6. 미국

미국에서는 정당하고 직접적인 利害關係者에게 行政기록의 接近을 허용하였던 1946년에 제정된 聯邦行政節次法 제3조에서 어느 정도 공문서공개가

14) 프랑스의 情報公開制度에 한 것으로는 成樂寅, 「情報公開法의 制定方向 -프랑스의 情報公開法을 中心으로-」, 社會科學研究(영남大) 第11卷1號, 1991.6. ; 多賀谷一照, 「フランスの公文書公開法制」,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68-73面 ; 同,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フランス)」,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53-61面 ; 同, 「フランスの情報公開制度と運用の實態」, ジュリスト 第742號, 141面 以下.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동 규정이 매우 概括的인 適用除外條項을 두고 있었으며 나아가 開示拒否에 관한 司法的 救濟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를 발전적으로 개정하여 1966년 7월『情報의 自由에 관한 法律(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情報는 원칙으로 公開하며, 어느누구도 公開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適用除外事項에 관해서도 9개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情報自由法에 의한 개시는 광범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문등 公開討論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行政機關의 행위에 대해 공중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그 이용에 있어서豫想된 目的以外의 이용(搜查의 詳細를 알기 위한 이용, 民事訴訟에 있어서 증거개시절차를 代替하기 위한 이용, 競爭相對方을 上廻하는 영업상의 이점을 획득하기 위한 이용 또는 資料를 입수하여 有料刊行物로 하기 위한 이용등 營利目的利用)이 많고 막대한 費用 및 事務負擔의 增加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5)</sup>

## 7. 카나다

---

15) 미국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黃佑呂, 「美國에 있어서의 情報公開法과 私生活保護法」, 韓國公法學會 國際學術大會論文集, 1989, 79面以下; 趙慶根, 「美聯邦情報公開法에 관한 약간의 考察」, 大韓辯護士協會誌 1986.7.; 卞在玉, 「美國情報自由法 概要」, 社會科學研究(영남大), 1982.2.; 自由人權協會(編), 「情報公開法をつくろう -アメリカ情報自由法に學ぶ」, 花信社 1990, 9面 以下; 戸松秀典, 「アメリカの情報公開法」,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62-67面; 掘部政男, 「アメリカの情報自由法」, 清水英夫(編), 前掲書, 126-152面; 阪本昌成,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アメリカ)」,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74-88面.

카나다에 있어서 情報公開法制定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카나다국민이 미국의 情報自由法에 의해 자국의 情報를 입수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1982년 7월 『情報接近法(Access to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현행 諸法律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에 포함된 情報에 接近權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2조), 公開除外事項에 관해서는 정부의 責任, 개인에 관한 情報, 제3자의 情報, 정부의 活動, 제정법에 의한 禁止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議院內閣制를 배려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시의 범위가 좁은 반면 運用上의 문제가 미국만큼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접근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企業으로 부터의 請求件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藥品認可, 航空·鐵道등의 규제, 食品價格등의 규제와 관련한 企業情報의 개시청구건수가 많다.<sup>16)</sup>

## 8. 핀란드

핀란드는 한때 스웨덴의 일부에 속하였으므로, 그 법적 유산으로서 情報公開法을 검토·제정하였다. 그러나 스웨덴과는 달리 통상의 法律의 形式으로 「公文書의 公開性에 관한 法律(The Law on the Public Character of Official Document)」을 1951년 2월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에 있어서 公開制의 특색은 文書라는 용어의 정의를 피하고 그 대신 文書라

16) 카나다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문헌으로는 Rowat, 「Canada」, in : D. C. Rowat, Ibid ; 長内 了,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カナダ)」,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89-101面.

는 용어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内容을 열거하고 있는 점, 行政文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公文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문서의 공개가 義務가 아니라 당해 행정청의 裁量에 맡겨진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非公開文書의 종류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해서는 동법 제10조부터 14조에 통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것은 「公文書公開制에 관한 特定한 適用除外를 정하는 規則(Regulation Containing Certain Exceptions in the Question of the Publicity of Official Documents, 1951년12월22일)」에서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9. 호 주

호주에서도 行政文書公開制는 196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2년 野黨인 노동당이 情報公開法制定을 공약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勞動黨은 집권후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1975년에 보수연합 정권에서도 계속 검토 단계에 머물다가 1982년 3월에 이르러 8장 94개조로 구성된 『情報自由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聯邦政府가 보유하는 情報에 접근하는 호주 사회의 권리를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을 그 목적으로 선언하고(동법 제3조), 適用除外文書에 관해서는 제4장에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議院內閣制를 고려하여 적용 제외 문서에 관한 大臣認定制度를 두고 있으며, 대신이 발하는 認定書에 당해 문서가 適用除外文書라는 최종 확인 효력이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행정

17) 핀란드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문헌으로는 Tore Modeen, 「Finland」, in : D.C.Rowat, ibid. ; 平松 穀, 前揭書, 136-149面 參照.

기관의 활동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事務處理를 방해하는 경우등의 개괄적인 적용제외나 청구자가 要求하는 形式에 따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대신의 권한행사를 현저히 妨害하는 경우에의 接近拒否, 또는 다른 形式에 의한 開示規定을 두어 행정의 원만한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 있어서의 情報公開請求件數의 90% 이상은 年金受給者, 納稅者 및 행정기관의 職員으로 부터이며, 企業側으로 부터의 청구는 적다.<sup>18)</sup>

#### • 10.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있어서의 行政情報公開制度는 英聯邦에 속하는 호주와 카나다의 동향에 강한 영향을 받아 1982년 12월 「行政情報에 관한 法律(Official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률은 情報公開의 목적으로서 정부의 情報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國會에 대한 행정책임의 원칙에 의거, 법률·정책의 形成과 執行에 참가하고 공무원의 職務執行에 그 책임을 명확히하고, 自己情報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公共利益 및 個人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양립하는 한도내에서 정부에 관한 情報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議院內閣制를 고려하여 特定情報를 불개시하는 것에 관한 總督令은 구제절차에 있어서 존중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行政의 공정·중립·효율적운영에 배려한 不開示規定을 두고 있다.<sup>19)</sup>

18) 호주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문헌으로는 Alan Missen, 「The Australian Struggle for Freedom of Information」, Transnational Data Report, Vol. V. No. 1., 1982 ; 大山札子,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オーストラリア)」,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102-113面.

19) 자세한 것은 平松穀, 前掲書, 315-322面.

## 1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73년 聯邦廳法에 의해 직무상의 守秘義務에 저촉하지 않는 한 情報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情報公開의 政策이 있었으나, 1987년 5월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聯邦行政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律(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률은 법률상의 守秘義務에 저촉하는 경우, 行政事務의 처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명백히 방해할 의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不開示할 것을 규정한 매우 개괄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12. 독일

독일에 있어서 行政情報公開制度의 논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는 關係情報를 열람하거나 접근할 권리가保障되어 있는 점(행정절차법 제29조, 제30조), 基本法(제5조1항)과 각종 개별법에도 시민일반에 대한 공개가 규정되어 있는 점(各州의 出版法) 및 聯邦데이터保護法에 의해 本人情報의 개시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특별한 法律制定의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일반적 情報公開法이 아닌 情報의 공개를 분야별로 정비하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 이 方法은 각각의 분야를 상세히 검토하여 그 분야에 가장 適合한 公開節次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20</sup>

### 13. 영 국

영국에서의 情報公開問題에 관해서는『公的機關이 보유하는 情報에 대한 접근에 관한 歐洲閣僚委員會評議會의 가맹국에 대한 勸告 R(81) 19의 英國에 있어서의 實施에 관한 報告(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the UK of Recommendation R(81) 19 of the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Public Authorities)』에 그 기본적인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광범위한 情報가 이용가능하도록 명확한 政策과 制定法을 구비하고 있으나, 일반적 情報公開法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sup>20)</sup>

### 14. 일 본

일본에서도 사회전체의 情報화의 진전과 행정기능의 확대에 수반하여 行政機關에 대량의 情報가 집적되고 있어서 이들 情報를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行政情報公開制度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

- 
- 20) 金善旭, 「西獨에 있어서의 情報公開와 私生活保護」, 韓國公法學會 國際學術大會論文集, 103面 以下; 石村善治,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西ドイツ)」,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38-52面; 同, 「西ドイツの知る権利と情報公開制」, 清水英夫(編), 前掲書, 153-170面.
  - 21) 영국의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문헌으로는 R.E.Wraith, 「United Kingdom」, in : D. C.Rowat, Ibid. ; James Michael, 「The Politics of Secrecy」, Penguin Books 1982 ; 飯稼和之,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イギリス)」,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63-73面 參照.

으며,<sup>27</sup> 나아가 각 政黨에서도 情報公開法을 마련하고 있다.<sup>28</sup> 또한 정부에서도 행정운영상의 소정의 개선조치를 도모하는 한편 情報公開의 制度化를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sup>29</sup> 또한 1991년 정기국회에서는 사회·공명·민사·사민연·연합참의원의 5개 야당이 共同으로 작성한 「行政情報公開에 관한 法律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情報公開條例 또는 行政조치로서의 情報公開에 관한 要綱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1년 12월 현재 199개 地方自治團體에서 情報公開에 관한 條例를 마련하고 있다.<sup>30</sup>

### III.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의 現況과 立法課題

#### 1.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論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行政情報公開制度가 法制화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 
- 22) 日本의 情報公開制度의 현황으로는 平松 穀, 「情報公開法成立への提言」, 法律のひろば 1991.5., 19面 以下 ; 清水英夫, 「情報公開」, 日本評論社 1983. 또한 捜部政男・入江嘉子, 「情報公開關係文獻目錄」, 法學セミナ-增刊綜合特輯シリーズ 19, 1982, 242面 以下 參照.
  - 23) 각 政黨 및 社會團體의 情報公開法(案)에 대한 것은 清水英夫, 「情報公開と知る権利」, 三省堂 1986 240面 以下 參照.
  - 24) 總務廳行政管理局 監修, 「情報公開 -情報公開問題研究會 中間報告-」, 第一法規 1991 參照.
  - 25) 日本의 自治團體의 情報公開制度의 운영실태에 관한 상세한 것은 ジュリスト増刊, 「ネットワーク社會と法」, 有斐閣 1988.6., 241面 以下 ; 自治大臣官房情報管理室(編), 「地域情報政策ハンドブック」, 第一法規 1990, 293面 以下 ; 捜部政男, 「情報公開と個人情報保護(總括・日本)」, 比較法研究 第48號, 1986, 126-148面.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忠北清州市議會에서 「清州市行政情報公開條例」를 제정하면서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26)</sup> 또한 憲法裁判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련하여 행정청의 기록열람 내지 복사신청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違法한 基本權侵害行爲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27)</sup>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도 行政情報公開制度에 관한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文書管理의 적정화, 文書閱覽制度의 정비·충실등 기존의 행정운영상의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관련하는 諸制度, 외국의 제도운영등의 조사연구등을 진행하는 한편 아울러 현재 行政機關이 국민에 대하여 情報를 공개하는 각종 制度 및 關聯法規定을 면밀히 검토하여 情報提供施策을 충실히하고 개별적인 情報公開制度를 확대하는등 현행제도의 정비·충실등을 통하여 그 경험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시청구권을 부여하는 情報公開制度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sup>28)</sup> 어떻든 情報公開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존제도와의 調整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전체로서 행정기관과 국민의 情報流通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情報公開制度를 더욱 충실화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情報公開를 규정하고

- 
- 26) 「清州市行政情報公開條例」에 관한 자세한 것은 韓國日報 1991년 12월 18일자 및 1992년 1월 9일자 기사 참조. 또한 鄭準鉉, 「情報公開條例制定의 可否 및 그 方向」, 韓國公法學會 第25回 學術發表會, 1992.2.29. 參照.
  - 27) 1989.9.4. 88현마 22 ; 1991.5.13. 90현마 133. 또한 2월 25일에는 軍事機密保護法의 일부조항에 대해 國民의 알 權利를 제한하는 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範圍가 한정적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라는 趣旨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東亞日報 1992년 2월 25일자 參照.
  - 28) 李尙圭, 「情報公開制度의 時急牲」, 考試界 1991.8., 13面.

있는 현행법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情報公開法의 제정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事項을 몇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2. 情報公開에 관한 現行制度概觀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情報를 공개하는 형태로서는 ①官報發刊制度, 政府記錄保存所의 자료열람제도, 政府公文書公開制度등 국민의 요구에 따른 情報提供, ②白書·年次報告書·年監·弘報資料刊行등 행정기관의 판단과 재량으로 행하는 各種政府刊行物의 發刊, ③법령에 의거하여 각종 行政情報 를 告示·公示·公告·公表·閱覽·公覽·公開하도록 규정한 것등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③의 경우 법령에 情報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대단히 많으며 이것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별표와 같다.<sup>29)</sup>

이와 같은 현행 制度 및 法規定을 전제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情報의 공개문제를 고려하는 경우 한편으로 情報提供施策의 충실화,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인 情報公開義務制度의 확대를 도모한다면 일반적인 情報公開制度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나 위의 情報公開制度는 그 실시가 행정기관의 判斷이나 裁量에 맡겨진 경우가 많으며 개별법령이 정한 한정된 行政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대상분야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를 개별분야의 情報提供施策 및 情報公開制度등을 점진적으로 정비·발전시켜 그 경험의 토대위에서 일반적인 개시청구권을 부여하는 情報公開制度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

29) 本文 附錄에 첨부한 별표 [情報公開와 관련한 現行法制의 概要] 參照.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일반적인 情報公開制度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内容을 이루는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3.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

#### (1) 對象情報

公開하는 情報의 範圍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情報는 記錄媒體와 事務節次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록매체란 情報가 기재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종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파일등이 포함된다. 사무절차에 관한 情報란 작성된 文書를 최종결정하는 決裁나 취득한 情報를 回覽하는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친것만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行政內部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未決裁의 것이나 計劃書(案)도 포함된다.

#### (2) 情報開示請求權者

情報開示의 청구자를 어느 範圍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外國人에 대해서 널리 개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인정하더라도 居住者, 滞留者, 局外에 있는 者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 외 法人 기타 團體에 대해서도 개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問題도 있다.

#### (3) 適用除外事項

情報公開制度를 도입하는 경우에 行政情報의 원칙으로 공개하는 취지와 보호할 필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情報를 不開示事項으로서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즉 法律의 규정 그 자체를 적용제외로 하는 사항, 法律의 적용을 받지만 必要的 적용제외사항, 裁量的

적용제외사항을 각각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情報公開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公開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適用除外事項의 선정과 그 운용 및 違法 또는 不當한 결정에 대한 구체 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제외사항을 정하는 방법은 情報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일정 종류의 情報 또는 일정 사항에 관한 情報를 비공개로 정하는 것이며, 請求된 情報가 그 종류 또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情報를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害惡이 발생하는지를 立證할 필요는 없고 자동적으로 非公開로 된다. ②일정 종류의 情報에 관하여 그 情報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害惡을 명시하여, 공개에 의해서 그 害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害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情報를 非公開로 하는 것 ③당국이 公開, 非公開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종류의 情報에 관하여 공개에 따른 公益과 비공개에 따른 私益을 비교형량하여 公開與否를 결정하여야 할 종류의 情報이며, 個人情報라든가 企業情報라든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적용제외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각국의 공통사항을 열거하면 ①防衛 및 國家의 안전, 外交關係, ③刑事搜查 및 訴追關係, ④個人의 프라이버시, ⑤機關內部의 作業文書, ⑥商去來上의 秘密, ⑦監督 및 規制를 위한 調査에 관한 資料, ⑧ 다른 法律에서 除外가 인정되고 있는 것 등이다.

또한 不開示事項의 규정방법으로서 「行政의公正, 원만한 執行의 確保에支障이 있는 것」이라는 一般概括條項을 둘 것인가가 문제된다. 외국의 입법례에도 이러한 一般概括條項을 둔 예가 많으며, 이러한 조항의 구체적 해석 ·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外國의 運用實態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4) 第3者情報의 取扱

企業情報등 第3者情報を 公開할 것인가, 公開한다면 당해 제3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즉 行政機關이 보유하는 情報에는 기업으로 부터 제출된 각종신청서, 계획서등의 企業情報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企業情報を 情報公開制度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企業情報에 관해서는 한편으로 개시의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른 편 企業秘密의 保護와 공정한 企業間競爭 및 행정이 필요로 하는 情報의 수집을 확보한다는 두가지 요청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개시로 하는 企業情報의 範圍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따라서 사람의 身體 및 生命·健康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企業등의 사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광범하게 檢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企業이나 企業以外의 法人 기타 團體에 관한 情報의 개시에 있어서는 事前告知, 聽聞등의 절차에 의한 情報提供者の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 個人情報의 保護

個人情報保護制度와 情報公開制度는 전자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합으로써 개인의 權利·利益의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대해 후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行政情報의 원칙으로 공개하고 보다公正하고 民主的인 행정 운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情報保護制度는 個人情報의 보유 및 이용·제공의 제한, 안전·정확성 확보, 個人情報資料의 공시, 個人情報의 본인에 대한 개시, 訂正請求權 등을 포함하는데 대해, 情報公開制度는 行政情報全般의 개시절차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양제도는 개시청구권에 의거한 情報의 開示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하므로 情報公開에

있어서 不開示事項에 의해 어디까지 個人情報의 보호가 가능한가 또는 반대로 個人情報保護制度와의 관계에서 情報公開制度의 불개시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調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個人情報의 취급을 정한 법령의 운용실태, 個人情報에 대한 국민의 意識動向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 救濟制度

情報開示請求에 대한 회답의 기한, 개시가 거부되거나 불충분하는 등 청구자에게 不服이 있는 경우의 구제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情報公開制度의 개시청구권은 憲法上의 주관적 권리인 알 権利의 실정법적 구체화이며, 개시청구권을 자기의 法律上의 利益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설정하려는 견해에서는 行政爭訟에 의한 구제가 당연하게 된다. 이에 대해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는 행정의 공정, 적정,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 공익을 保護法益으로 하는 것이며 개시청구권자는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련없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見解에서 개시청구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이익의 구제제도로서의 행정쟁송에 의한 救濟制度는 인정하지 않고 그 구제를 위해서는 訴訟制度上에 있어서 객관소송의 형태로 되는 등 특별한 法律上의措置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구제제도의 문제는 개시청구권을 어떠한 것으로서 설정하는가라는 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과제이다.

#### (7) 既存의 情報公開制度와의 關係

情報公開의 제도화에는 情報公開制度에 의거한 개시청구권의 내용과 기준의 법령에 의거한 情報公開制度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즉 양제도가 충복하는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이를 調整할 것인가의 문제, 既存制度로서 情報

의 일부만을 개시하는 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 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한 情報에 관해 情報公開制度로서 개시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既存制度에 개시의 조건·방법등에 制限이 가해진 情報에 관해 情報公開制度로서 개시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措置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IV. 結 語

民主社會의 존속과 발전에 있어서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국민의 알 權利의 총족이며, 특히 국가등의 情報를 공개하는 시스템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公開制度가 제도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정기관이 情報의 체계적·조직적인 整理 및 管理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情報管理制度가 정비된 후에 情報公開를 제도화하지 않고, 우선 情報公開制度의 도입시기를 결정하고 현재의 情報管理制度를 확립하려는 것은 情報公開制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情報公開制度를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조직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基盤整備와 보존기한에 의거한 適正한管理制度의 확립방안등이 우선적으로 檢討되고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의 情報라는 것은 知識이 아니라 데이터이므로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한 手段에 불과하다. 情報公開制度에 의하여 情報를 제공받더라도 그 情報를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정보가 公開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情報公開制度가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情報判斷能力의 양성, 즉 건전한 常

識의 強化가 요구된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개요〉

항 목	관련 법 제
행정기관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li> <li>•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기밀의 공개)</li> <li>•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문서류의 열람·복사)</li> <li>•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등의 공개)</li> <li>• 정당법 제28조(강령과 당헌의 공개) 등</li> </ul>
국정운영 등의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50조(국회회의의 공개)</li> <li>•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3조(회의 공개)</li> <li>• 국회법 제75조(회의 공개)</li> <li>• 지방자치법 제57조(회의 공개) 등</li> </ul>
재판절차 등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109조(재판 공개)</li> <li>•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변론·결론선고의 공개)</li> <li>•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심리·판결 공개)</li> <li>•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 공개)</li> <li>•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36조(심문의 공개) 등</li> </ul>
선거 등에의 참여를 참여를 위한 공개제도 (명부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선거법 제19조(명부열람)</li> <li>• 국회의원선거법 제20조(명부열람)</li> <li>• 국민투표법 제16조(명부열람)</li> <li>•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2조(명부열람)</li> <li>•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8조(명부열람) 등</li> </ul>
국민생활상 필요한 정보의 공개제도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법 제21조(등초본 열람)</li> <li>• 호적법 제12조(호적부 열람)</li> <li>• 주민등록법 제18조(등초본 열람·청구)</li> <li>• 지적법 제12조(지적공부 열람)</li> <li>•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서류 열람)</li> <li>• 의장법 제76조(서류 등의 열람)</li> <li>• 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등</li> </ul>
주요국가시책에 대한 정보 공개제도 (공표·고시·공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대한 고시)</li> <li>•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li> <li>• 농법기본법 제6조(농업관측의 공표)</li> <li>• 초지법 제6조(초지조상지구의 고시)</li> <li>• 산림법 제58조(보안림에정지의 지정·해제고시)</li> <li>• 공산품품질관리법 제3조(품질표시기준고시)</li> <li>•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람)</li> <li>•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li> <li>• 도시재개발법 제15조(관계서류의 공람) 등</li> </ul>
지시·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위반약관의 공개)</li>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위반사실의 공표)</li> <li>• 소비자보호법 제10조(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등</li> </ul>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동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li> <li>• 관광진흥법 제20조(관광정보의 활용)</li> <li>• 환경영화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li> <li>• 소비자보호법 제13조·제18조·제28조(각종 정보의 제공) 등</li> </ul>

주요 국가의 정보공기법의 현황





